#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1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 윤준병 • 이기헌 • 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 나.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 라.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 마.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 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연안화물선 및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천연가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4. (생 략)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u>2024년</u>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

<u>2029년</u>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u>ㅇ</u> )
②
<u>2029년</u>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저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 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 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		
-		
-	<u>2029</u> <u>-</u>	<u> </u>
-		
-		
-		
제1	16조(농어촌 주택개량이	네 대한
7	감면) ①	
-		
-		
-		
-		
-		
-		
-		
-		
-		
-		
-		
-		
-		
-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 2. (생략)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 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

00001 d
<u>2029년</u>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029년</u>
 1.·2.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

<u>2029년</u>
2029년
②
<u>2029년</u>

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1. 2. (생략)
-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 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u>.</u>
1. • 2. (현행과 같음)
③
2029년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